



## 영국 ‘강력범죄 법안(Serious Crime Bill) 2006-2007’의 내용과 전망

### I. 입법의 배경과 경과

최근 런던, 맨체스터 등 영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갈수록 조직화·국제화 되어 가는 대규모 강력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형사 관련 법규로는 처벌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영국 내의 여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여러 사람들이 행위에 가담하면서도, 실제로 범죄를 조직하고 주도한 자는 직접 행위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의 행위지와 피해발생 장소가 국내외로 다르게 나타나거나 준비과정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06년 7월 17일에 ‘New Powers Against Organised and Financial Crim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영국 내의 강력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처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국제 및 강력범죄 방지와 처벌, 수사를 돕기 위한 강력범죄 대처 관련 법안, 즉 ‘강력범죄 법안(Serious Crime Bill) 2006-2007’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6일 영국 의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본 법안은 영국 의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절차를 마치면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다.

### II. 법안의 개요

‘강력범죄 법안 2006-2007’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 강력범죄 방지규정의 마련
- 강력범죄에 대한 가담행위와 국제조직범죄 등에 관한 규정 강화
- 범죄 방지와 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 관련 자료의 검색, 비교 및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 Asset Recovery Agency 제도의 폐지에 따른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의 권한 및 임무의 이전과 관련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
- 특정 조사 및 재정조사 권한부여 및 영장에 관련된 Proceeds of Crime Act 2002의 개정
- 수사 권한 규정의 개정

### III. 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본 법안은 총 4장 9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부칙을 포함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강력범죄 예방조치(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 제1장

제1장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들은 강력범죄 현상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 규정의 위반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이 장에는 항소의 권리와 면책,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 General(총칙) : 제1조~제5조
- General safeguards in relation to orders(조치와 관련된 긴급조치 일반) : 제6조~제10조
- Information safeguards(정보관련 긴급조치) : 제11조~제15조
- Duration, variation and discharge of orders(조치기간과 변경 및 면책) : 제16조~제18조
- Extension of jurisdiction to Crown Court(형사법원 관할권의 확장) : 제19조~제22조
- Appeals(항소) : 제23조, 제24조
- Enforcement(집행) : 제25~제29조
- Particular types of bodies(특정 종류의 단체) : 제30조~제34조
- Supplementary(부칙) : 제35조~제39조
- Interpretation Part 1(제1장의 해석) : 제40조, 제41조

이 장에서는 High Court에 ‘강력범죄 예방 조치권’(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을 부여하였다. 이 명령권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태의 조치이다. 특정 개인에게 부과된 이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곧바로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1조 제1항에서는 High Court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명시하였다. 특정인의 행위가 영국 내에서 강력범죄에 연계되었든 국외에서 연계되었든, 그것이 영국의 공익을 위협하고 영국 내의 강력범죄조치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제1조). 여기에서 강력범죄에 ‘연계된’ 행위라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조력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제2조).

제5조는 법원이 제정하는 강력범죄 예방 조치권의 예들을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특정인의 여행, 사업, 노동 등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서 마련한 예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규정이 법원의 조치권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은 여기에서 명시된 조치의 형태가 아니어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부과 대상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제6조).

이 장은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부터 제15조), 조치의 기간과 변경 그리고 면책 등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였다(제16조부터 제18조). 법원의 조치가 부과되고 정보가 수집되는 절차에 있어서,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제9조 및 제23조 제1항 등). 또한 제1조에 따라 조치의 부과



는 일반적으로 High Court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Crown Court의 관할에 해당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Crown Court가 이와 같은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제19조).

조직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치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나아가 법인에 유사한 비법인조직과 파트너십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제30조 이하). 이러한 법인 등에는 외국에서 조직되어 영국 내에 영향을 주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제33조).

## 2. 방조 및 공범(ENCOURAGING OR ASSISTING CRIME) - 제2장

제2장은 범죄에 대한 방조 및 공범에 적용할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 장은 점차 조직화 되어 가는 영국 강력범죄에 정부가 대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 장은 기존의 보통법상 인정되어오던 교사범(Offence of incitement) 개념을 폐지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방조하거나 원조하는 행위(intentionally encouraging or assisting crime)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 Inchoate offences(미수) : 제42조~제47조
- Reasonableness defence(정당방위) : 제48조
- Limitation on liability(책임의 제한) : 제49조
- Jurisdiction and procedure(관할과 절차) : 제50조~제56조
- Consequential alterations of the law(법규의

변경) : 제57조~제61조

- Interpretation: Part 2(제2장의 해석) : 제62조~제65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은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거나 믿으면서 이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어느 특정인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 방조 등의 가담행위가 영국 내에서 일어날 것임을 인식한 경우에, 그 자가 위반행위 당시에 국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제50조). 이 규정은 국제적인 조직범죄행위에 대비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정인(A)이 이 규정에 따른 다른 자(B)의 방조 등 범죄의 가담행위를 미리 준비하거나 조정하고 그 자(B)가 방조 등의 행위를 실행한 경우, 이를 준비하고 조정한 A 역시 방조 등의 가담행위자로 취급한다(제64조).

이렇게 조직범죄행위에 대처하여 폭넓게 처벌 가능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보통법(Common Law)의 방조 등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폐지된다(제57조). 또한 이 장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면 정당방위의 개념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으며(제48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제한된다(제49조).

### 3. 강력 및 기타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기타 조치(OTHER MEASURES TO PREVENT OR DISRUPT SERIOUS AND OTHER CRIME)- 제3장

제3장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규정하였으며, 3개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사기에 관한 규정, 제2부는 2002년 형사절차법의 규정들에 관한 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3부는 수사기관의 비용지출 등에 관한 권한부여 규정들이다.

#### CHAPTER 1 PREVENTION OF FRAUD(사기범의 예방)

- Sharing information with anti-fraud organisations (반 사기범죄 기관과의 정보공유) : 제66조~제70조
- Data matching (데이터 조회) : 제71조

#### CHAPTER 2 PROCEEDS OF CRIME(형사 소송 절차)

- Assets Recovery Agency(재회회복기관) : 제72조
- Detained cash investigations(유치된 자금의 조사) : 제73조~제75조
- Extension of powers of accredited financial investigators(재정조사권한의 확대) : 제76조~제79조
- Use of force in executing search warrants: Scotland(스코틀랜드에서의 조사권한 이용) : 제80조~제83조

#### CHAPTER 3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조사권한의 규제규범) : 제84조

제1부는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사기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해 특별한 기관이 설치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범죄 방지 및 수사를 위해 이용된다. 정보수집 및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타 규범들과의 일정한 조화가 필요한데, 제66조는 이 법에 따른 정보수집 및 이용이 'Data Protection Act 1998',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Human Rights Act 1998' 등 관련 규범들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규정들을 두었다.

제72조는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의해 설치되었던 Assets Recovery Agency를 폐지하고, 새롭게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등을 설치하여 기존의 기능을 다른 기관들과 합리적으로 분배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경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조사 등의 임무 수행과 수사기관의 기능, 이를 위한 영장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한 규정도 마련하였다(제73조 이하).

### 4. 일반규정 및 종결규정(GENERAL AND FINAL PROVISIONS)- 제4장

제4장은 이 법에 따른 조치제정권 부여 등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규정 및 최종규정들에 관한 것이다.

- General(일반규정) : 제85조~제88조
- Final(최종규정) : 제89조~제91조



일반규정은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거나 폐지될 다른 법규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이행기간과 조건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의 발효 등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최종규정을 두고 있다.

#### IV. 법안의 적용범위

이 법안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사항을 명시하여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규정은 스코틀랜드 혹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서 개정된 2002년 형사소송법상의 재무수사 권한 부분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또한 법안 제2장의 규정들 역시 그러하다.

#### V. 법안의 전망 및 기대 효과

현재 본 법안이 영국 의회에 계류 중이나, 강력조직범죄 및 총기류 범죄 또는 대규모 국제조직범죄가 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 및 영국 국민들의 관심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동인식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절차를 통과하여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의회 관련절차의 진행 중에 일부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내용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2007년 1월 제출된 초안에 비해서 몇 개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고 조정되었다.

이 법안의 발효를 통해, 수사 당국의 권한 확대와 강력조직 범죄에 대한 영국정부의 처벌, 방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외에서 범죄를 사주하거나 행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고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김 봉 철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